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98
----------	-----

제출연월일 : 2008. 2. 15.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조직개편 및 사무위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무를 신설·삭제하고 소관 부서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관계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인용법령과 소관부서를 정비함(안 별표 2 및 별표 3).
- 나.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무의 권한이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된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2).
- 다.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무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이나 장관으로 변경된 사무를 삭제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관련 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8. 1. 25. ~ 2. 4. / 접수의견 1건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중 “토지정보과”를 “지적과”로 한다.

별표 2 공원산림과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 공원산림과 제1호다목중 “같은 법 제14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별표 2 공원산림과 제1호다목 내지 러목을 각각 가목 내지 너목으로 한다.

별표 2 공원산림과 제2호 수임기관란중 “수목원관리사업소장”을 “한발수목 원장”으로 한다.

별표 2 공원산림과란 다음에 푸른도시사업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푸른도시 사 업 단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 음의 권한 (보문산, 세천, 가양, 계족산공원에 한한다. 다만, 계족산공원중 장동 산림욕장 구역은 제외한다)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공원관리 사업소장	

별표 2 운송주차관리과 제1호아목을 타목으로 하고, 아목 내지 카목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운송주차 관 리 과	아.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자. 검사의 최고 차. 수시검사 명령 및 정비명령 카. 검사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제13조제5항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13조제8항	차량등록 사업소장	

별표 2 소관부서란중 “도로과”를 “건설도로과”로 한다.

별표 3 경제정책과 제4호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5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 경제정책과란 다음에 기업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기업지원과	1. 영제조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전개발 및 영제조업 허가 및 변경 나. 허가의 취소 등 다. 청문 2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립·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의 보완 요구 및 통보	·「염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제12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다.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서 수리 및 변경신고증 교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라.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같은 법 제18조· 제28조제36조 제42조		
	마. 임시총회 소집 등의 소집권자 지명 및 통보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바.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중지 명령 및 통보	·같은 법 제2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2조		
	사. 자료제출의 요구	·같은 법 제27조		
	아.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 명령·통보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자.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및 통보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차.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9조		
	카. 직장폐쇄 신고수리	·같은 법 제46조		
	타.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파.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농업유통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농업유통과	1. 가축방역에 관한 보고 2.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농업유통과	<p>가. 허가 및 허가증 교부</p> <p>나. 허가사항 변경</p> <p>다. 허가증의 재교부 및 갱신</p> <p>라. 관리약사 변경신고 수리</p> <p>마. 보고와 검사 등</p> <p>바. 폐기명령 등</p> <p>사. 개수명령</p> <p>아.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p> <p>자. 청 문</p> <p>차. 과징금 부과·징수</p> <p>카. 과태료 부과·징수</p> <p>3.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제외)</p> <p>가. 농업기반시설의 등록</p> <p>나.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제44조 및 제45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 「약사법」 제45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 같은 규칙 제25조 · 같은 규칙 제20조제4항 · 「약사법」 제69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농어촌정비법」 제17조 · 같은 법 제23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4. 토지소유주가 시행하는 개간 등 농업 생산기반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시행의 인가·통지·고시 및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나. 준공검사·통지 다.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승인 취소 라. 청문	· 「농어촌정비법」 제12조 · 같은 법 제99조 · 같은 법 제102조 · 같은 법 제103조		

별표 3 농업유통과란 다음에 산업용지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산업용지팀	1. 산업단지내 시유행정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허가 나. 대장 및 증서 보존 다. 재산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같은 법 제44조제1항 · 같은 법 제44조제2항	구 청 장	

별표 3 기업지원팀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소관부서란중 “토지정보과”를 “지적과”로 한다.

별표 3 관광문화재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관 광 문화재과	1. 문화재 수리 2.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 「문화재보호법」 제17조· 제75조 ·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2항	구 청 장	

별표 3 보건위생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보건위생과	1.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증 교부 다.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 라. 보고 및 검사 등 마. 업무개시 명령 등 바. 폐기명령 등 사. 개수명령 아.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자. 청 문 차. 과징금 부과·징수 카. 과태료 부과·징수	· 「약사법」 제4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6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구 청 장	

별표 3 환경정책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환경정책과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기오염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나.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다. 비산먼지의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환경정책과	라. 운행차 수시 점검 (다만, 필요시 시장이 수시 점검 할 수 있다) 마.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정지 명 령 및 개선결과 보고의 수리(다만, 시장이 점검한 차량은 제외한다) 바.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등 사. 청문 아.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 8호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94조제1항 제6호·제7호 및 제2항제3 호·제7호·제9호	구 청 장	

별표 3 수질관리과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수질관리과	1. 먹는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입·검사·수거 등 나. 지도 및 명령 등 다. 폐기처분 등 3. 공공수역오염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	· 「먹는물관리법」 제42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3항·제4항	구 청 장	

별표 3 공원산림과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공원산림과 제2호다목중 “같은 법 제14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별표 3 공원산림과란 제2호다목 내지 처목을 각각 가목 내지 어목으로 한다.

별표 3 공원산림과란 다음에 푸른도시사업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푸른도시 사업단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 음의 권한 (보문산, 세천, 가양, 둔산대공원, 계족산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계 족산공원중 장동산림욕장 구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 2. 광장시설 유지관리 (경관광장 등 공원녹지 기능을 하 는 광장에 한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	구 청 장	

별표 3 소관부서란중 “도로과”를 “건설도로과”로 한다.

별표 3 도시계획과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3 건축과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건 축 과	6. 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 치되는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나. 2이상의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 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제1호 · 같은 법 제3조의2제2 호	구 청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경제정책과
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일반기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3조제2호중 “기업지원팀장”을 각각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토지정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토지정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도로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도로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민방위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민방위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민방위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

⑩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대전광역시 수목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6조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중 “소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비고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비고
토지정보과	1. (생략)				지적과	1. (현행과 같음)			
공원산림과	1. (생략)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 다. (생략) 라. ~ 리. (생략) 2. (생략) 가. ~ 카. (생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3조 · 같은 법 제14조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산림과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가. (현행과 같음) 나. ~ 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카. (현행과 같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한 발 수목양장
<신설>					푸른도시사업단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문산 세천 가양 계곡산공원에 한한다. 다만 계곡산공원중 장동산립욕장 구역은 제외한다)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공원관리사업소장	
운송주차관리과	1. 건설기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사.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아. (생략) 2. ~ 4. (생략)		차량등록사업소장		운송주차관리과	1. 건설기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자. 검사의 최고 차. 수시검사 및 정비명령 카. 검사기간의 연장 타.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13조제4항 · 같은 법 제13조제5항 ·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같은 법 제13조제8항	차량등록사업소장	
도로과	1. ~ 3. (생략)				건설도로과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비고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비고
경제정책과	1. ~ 3. (생략) 4. (생략) 5. ~ 11. (생략)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5항	구청장		경제정책과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11. (현행과 같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제5항		

현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비 고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비 고
<신설>					기 업 지원과	1. <u>임제조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 <u>임전개발 및 임제조업 허가 및 변경</u> 나. <u>허가의 취소 등</u> 다. <u>청문</u> 2 <u>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 <u>설립·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u> 나. <u>노동조합 설립신고 등의 보완요구 및 통보</u> 다. <u>노동조합의 변경신고서 수리 및 변경신고증 교부</u> 라. <u>노동위원회 의결 요청</u> 마. <u>임시총회 소집 등의 소집권자 지명 및 통보</u> 바. <u>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중지명령 및 통보</u> 사. <u>자료제출의 요구</u> 아. <u>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 명령·통보</u> 자. <u>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및 통보</u> 차. <u>쟁의행위의 신고수리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수리</u>	· 「 <u>임관리법</u> 」 제8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 「 <u>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u> 」 제10조 제2조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 법 제18조 제28조 제36조 제42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 같은 법 제21조 제4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2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비고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비고
						가. 직장폐쇄 신고수리 타.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 파.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농업 유통과	1. 가축방역에 관한 보고 2.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증 교부 나. 허가사항 변경 다. 허가증의 재교부 및 갱신 라. 관리약사 변경신고 수리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폐기명령 등 사. 개수명령 아.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징수 카. 과태료 부과징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 ·「약사법」 제35조 제2항 및 제37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약사법」 제35조 제3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같은 규칙 제25조 ·같은 규칙 제20조 제4항 ·「약사법」 제64조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2 ·같은 법 제71조의3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구청장		농업 유통과	1. 가축방역에 관한 보고 2.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증 교부 나. 허가사항 변경 다. 허가증의 재교부 및 갱신 라. 관리약사 변경신고 수리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폐기명령 등 사. 개수명령 아.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징수 카. 과태료 부과징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 ·「약사법」 제44조 및 제4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약사법」 제4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같은 규칙 제25조 ·같은 규칙 제20조 제4항 ·「약사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농업유통과	<p>3.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제외)</p> <p>가. 농업기반시설의 등록</p> <p>나.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p> <p>다.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p> <p>4. 토지소유주가 시행하는 개간 등 농업 생산기반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시행의 인가통지·고시 및 시행계획의 변경승인</p> <p>나. 준공검사통지</p> <p>다.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승인 취소</p> <p>라. 청문</p> <p>5. 비료유통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비료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함)</p> <p>가. 비료의 품질검사</p> <p>나. 판매중자회수폐기 등의 조치</p> <p>다. 감독</p> <p>라.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농어촌정비법」 제17조</p> <p>· 같은 법령 시행령 제20조</p> <p>· 같은 법 제20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p> <p>· 같은 법 제21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p> <p>· 「농어촌정비법」 제12조</p> <p>· 같은 법 제94조</p> <p>· 같은 법 제98조</p> <p>· 같은 법 제98조의2</p> <p>· 「비료관리법」 제18조</p> <p>· 같은 법 제19조</p> <p>· 같은 법 제24조</p> <p>· 같은 법 제32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p>	구청장		농업유통과	<p>3.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제외)</p> <p>가. 농업기반시설의 등록</p> <p>나.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p> <p>4. 토지소유주가 시행하는 개간 등 농업 생산기반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시행의 인가통지·고시 및 시행계획의 변경승인</p> <p>나. 준공검사통지</p> <p>다.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승인 취소</p> <p>라. 청문</p>	<p>· 「농어촌정비법」 제17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농어촌정비법」 제12조</p> <p>· 같은 법 제99조</p> <p>· 같은 법 제102조</p> <p>· 같은 법 제103조</p>	구청장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비 고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비 고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비 고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비 고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비 고	
기 업 지원팀	1. 산업단지내 시유행정재산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허가 나. 대장 및 증서 보존 다. 재산관리 2. 염제조업 등에 관한 다음 의 권한 가.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 허가 및 변경 나. 허가의 취소 등 다. 청 문 3.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립·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 의 보완요구 및 통보 다.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서 수리 및 변경신고증 교부 라.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마. 임시총회 소집 등의 소집권자 지명 및 통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20조 · 같은 법 제 44조제1항 · 같은 법 제 44조제2항 · 「염관리 법」 제8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제10조제 12조제28 조 · 같은 법 제 시행령 제 13조 ·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 법 제18조· 제28조· 제36조· 제42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구청장		<삭제>																				

현행					개정안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u>바.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장중지명령 및 통보</u> <u>사. 자료제출의 요구</u> <u>아.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 명령·통보</u> <u>자.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및 통보</u> <u>차.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수리</u> <u>카. 직장폐쇄 신고수리</u> <u>타.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u> <u>파. 과태료 부과징수</u>	·같은 법 제2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9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신설>					산업용지	1. 산업단지내 시유행정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u>가. 사용허가</u> <u>나. 대장 및 증서 보존</u> <u>다. 재산관리</u>		구청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제44조제2항	
토지정보과	1. (생략)				지적과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관광문화재과	1.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희·음식점업의 지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증교부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증의 재교부 나. 양수, 합병, 지위승계, 휴업, 폐업의 신고 수리 다. 지정취소, 사업정지, 개선명령 라. 과징금 부과징수 마. 청문 바. 보고 및 검사 사. 과태료 부과징수 2. 문화재 수리 3.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 다음의 권한 가. 경내지에서의 동산 또는 부동산의 대여·담보의 제공 나. 건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철거 다.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산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구청장		관광문화재과	1. 문화재 수리 2.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 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제75조 · 「전통사찰 보존법」 제9조제2항	구청장	

현행					개정안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보건위생과	1.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증 교부 다.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 라. 보고 및 검사 등 마. 업무개시 명령 등 바. 폐기명령 등 사. 개수명령 아.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징수 카. 과태료 부과징수 2. ~ 6. (생략)	·「약사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4조의2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같은 법 제69조의2 ·같은 법 제71조의3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령 제31조	구청장		보건위생과	1.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증 교부 다.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 라. 보고 및 검사 등 마. 업무개시 명령 등 바. 폐기명령 등 사. 개수명령 아.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징수 카. 과태료 부과징수 2. ~ 6. (현행과 같음)	·「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구청장	
환경정책과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기오염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나. 연료의 제조·공급·판매·사용 등의 규제 및 사용승인 다. 비산먼지의 규제 라. 운행차 수시 점검 (다만, 필요시 시장이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2 ·같은 법 제26조·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7조	구청장		환경정책과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기오염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나.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다. 비산먼지의 규제 라. 운행차 수시 점검 (다만, 필요시 시장이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61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환경정책과	<p>마.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정지 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의 수리 (다만 시장이 점검한 차량은 제외한다)</p> <p>바. 배출시설 설치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p> <p>사. 청문</p> <p>아. 과태료 부과징수</p> <p>2. (생략)</p>	<p>같은 법 제38조</p> <p>같은 법 제49조제8호의2</p> <p>같은 법 제52조</p> <p>같은 법 제90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항제6호제1호제1호</p>	구청장		환경정책과	<p>마.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정지 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의 수리(다만 시장이 점검한 차량은 제외한다)</p> <p>바.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등</p> <p>사. 청문</p> <p>아. 과태료 부과징수</p> <p>2. (현행과 같음)</p>	<p>같은 법 제70조</p> <p>같은 법 제82조제1항</p> <p>같은 법 제85조</p> <p>같은 법 제94조제1항제6호제5호 및 제2항제3호제7호제9호</p>	구청장	
수질관리과	<p>1. 먹는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출입·검사수거 등</p> <p>나. 지도 및 개선명령</p> <p>다. 폐기처분 등</p> <p>2. (생략)</p> <p>3. 공공수역오염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p>	<p>「먹는물관리법」 제34조제1항</p> <p>같은 법 제36조제1항</p> <p>같은 법 제39조제1항</p> <p>「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4항</p>	구청장		수질관리과	<p>1. 먹는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출입·검사수거 등</p> <p>나. 지도 및 명령 등</p> <p>다. 폐기처분 등</p> <p>2. (현행과 같음)</p> <p>3. 공공수역오염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p>	<p>「먹는물관리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6조</p> <p>「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항</p>	구청장	
공원산림과	<p>1. (생략)</p> <p>2. (생략)</p> <p>가. 녹지활용계약</p> <p>나. 녹화계약</p> <p>다. (생략)</p> <p>라. ~ 처. (생략)</p> <p>3. 광장시설 유지관리 (경관광장 등 공원녹지 기능을 하는 광장에 한한다)</p>	<p>「도시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2조</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14조</p> <p>「국유재산법」 제43조</p>	구청장		공원산림과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 <삭제></p> <p><삭제></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어. (현행과 같음) <삭제></p>	<p>「도시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p>	구청장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비 고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비 고
<신 설>					푸른도시 사업단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다음의 권한 (보문산, 세천, 가양, 둔신 대공원, 계족산공원은 제외 한다. 다만, 계족산공원중 장동산림욕장 구역은 포함 하지 아니한다)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 2. 광장시설 유지관리 (경관광장 등 공원녹지 기 능을 하는 광장에 한한다)		구청장	
도로과	1. ~ 7. (생략)				건 설 도로과	1. ~ 7. (현행과 같음)			
도 시 계획과	1. ~ 4. (생략) 5. 전문건설업에 관한 다음 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증 교부 나. 기재사항 변경수리 다. 양도, 법인의 합병, 상속신고 수리 라.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마.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등 바. 시정명령 등 사.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 과징수 아. 등록 말소 등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산 업 기본 법」 제9 조·제9조 의2제1항 및 제3항 · 같은 법 제9조의 2제2항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82조 · 같은 법 제83조 · 같은 법 제86조 · 같은 법 제101조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비 고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비 고
건축과	<신설>				건축과	6. 광역단위 광고물 등에 관한 허가 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 등에 관한 허가 나. 2이상의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 등에 관한 허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제1호 같은 법 제3조의2제2호	구청장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접수 및 검토결과

제 출 자 (부서)	의견접수 내용	검토결과
건 축 과	○법개정에 의한 신규사무 추가 - 2개 이상의 광역, 기초단체에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광고물등 허가	○기존 구에서 추진하던 업무로 업무추진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반영”

관 계 법 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검사 등 <개정 2007.4.6>)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3.7,
1997.12.13, 2001.1.16, 2007.4.6, 2007.4.11, 2007.4.27>

1. 신규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
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
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등록번호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7.4.6>

1. 삭제 <1999.1.29>
2. 삭제 <1999.1.29>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

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4.6>

⑦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부적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7.4.6>

⑧시·도지사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4.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

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 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제45조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

④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는 환자가 요구하면 기존 한약서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조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 (보고와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1.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의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의료기관, 의약품등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창고·점포나 사무소, 그 밖의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

3. 제71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물품·의약품등의 품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품 수거

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업무 개시 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하게 하거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②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제71조 (폐기 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 및 평가기준, 회수·폐기, 그 밖

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 (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改修)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업종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처방만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5. 제39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약국 개설자가 제79조제2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과 같다. <개정 2007.10.17>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1. 제76조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 품목제조금지명령, 품목수입금지명령
2.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취소

제81조 (과징금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그 징수기관이 속하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9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0.17>

1. 제7조를 위반하여 약사·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2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0조를 위반하여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0.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4조 (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시·도지사는 제53조에 따라 한약

업사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와 허가연월일
2. 한약업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한약업사의 시험합격연월일
4. 영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제57조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① 한약업사가 그 영업소(이하 "한약방"이라 한다)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한의사·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약방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허가를 한 경우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그 한약방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한약업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1조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시·도지사는 제59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와 허가연월일
2. 도매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영업소의 명칭 및 그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창고의 소재지
5. 수탁자 영업소의 명칭 및 창고의 소재지(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기재한다)
6.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도매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호·면허번호(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자격증 또는 학위등록번호)

7. 자본금 및 자본평가액
8. 일반종합도매, 수입의약품도매, 시약도매, 원료의약품도매, 한약도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종류
9. 보관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2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23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때
2.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 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5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99조 (준공검사) ①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2조 (허가 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삭제 <2007.8.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나. 제12조제3항·제15조제2항·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제27조제1항·제29조제3항·제31조제2항·제33조제1항·제36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제82조제2항·제88조제1항·제92조제3항 또는 제95조제2항에 따른 승인

- 다. 제29조제3항·제72조제1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정
3. 사정이 바뀌어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82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신설 2007.8.3>

제103조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2. 제47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3. 제76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취소
4. 제102조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비료관리법】

제18조 (품질검사) ①삭제 <1999.3.31>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수입·보관·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에 대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3.31, 2003.3.19, 2007.8.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3.31, 2003.12.11, 2007.8.3>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의한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료
5.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제24조 (감독)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업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7.8.3>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업자·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점포·창고·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3.31, 2007.8.3>

제32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8.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식도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지역별 관광협회

②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관광사진업만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7조 (수리 등)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제22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화재 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할 것
2.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實測),

설계 및 그 대가 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5조 (준용규정) ①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4항 및 제35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②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9조,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허가 사항) ①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貸與)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3.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 「산지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

가신청 대상 행위는 각 해당 법률의 허가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④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⑤전통사찰의 주지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각각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5. 「건축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⑥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

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비산(飛散)먼지의 규제)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71조에 따라 등록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확인한 확인검사대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62조와 제63조에 따른 검사업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업무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1. 사업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62조제2항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나 정밀검사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74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위한 확인검사 대행자
9. 제77조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나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10.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85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3.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합시정명령
5.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 제66조에 따른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7. 제7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제9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6.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 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8. 제44조제2항이나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5항(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7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70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

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2조 (출입·검사·수거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먹는물관련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
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하는 것
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
4. 관계 공무원이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하는 것

②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 (지도와 개선명령)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 또는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 (폐쇄조치 등) ①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5.17>

⑤삭제 <2007.5.17>[전문개정 1999.4.15]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5.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1999.4.15]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①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 합병신고가 있을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9.4.15>

③제1항 및 제2항은 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5.17>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4.12.31,

2007.5.17>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7.5.17>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7.5.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1.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7.5.17>

제81조 (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1. 삭제 <1999.4.15>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2의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2004.12.31>

5. 제22조제5항·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8.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제82조 (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제2호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4.12.31, 2007.5.17>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1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3. 삭제 <2004.12.31>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개정 1999.4.15>)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3호·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5.5.26, 2005.11.8, 2007.5.17>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1의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게 된 때.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1999.4.15>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12.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제86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7.5.17>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4.15, 2007.5.17>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7.5.17>

③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④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태료 부과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5.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수리)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 말소
6. 삭제 <2007.12.28>
7. 삭제 <1999.8.6>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12의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1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 ② 삭제 <2007.12.28>
- ③ 삭제 <2007.12.2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